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272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
설치 및 운영 조례안  
【의원발의】  
검토보고서



2020. 7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서

2020. 7. 15.

경제도시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- 발의자: 김정윤 의원 등 6명(박종길, 김인호, 안영란, 이영빈, 배지훈)
- 발의일자: 2020. 7. 2.
- 회부일자: 2020. 7. 3.
- 검토기간: 2020. 7. 3. ~ 7. 9.(5일간)

## 2. 제정이유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(안 제3조 ~ 제4조)
-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, 조직(안 제5조 ~ 제6조)
- 센터의 지원 등(안 제7조 ~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제정조례안: 붙임 참조
- 관계법령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0. 7. 2. ~ 2020. 7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」(2013.11.6. 달서구& 계명대학 협약체결)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조례안 제6조 조직원의 자격요건이 불분명함.  
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종사자(센터장, 직원)의 자격증 및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염격히 세분화하고 있음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### 【 조문 수정 의견 】

조례안	수정(안)	사유
제6조(조직) ① 센터에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, 영양사, 위생사 등 전문 인력,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.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.	제6조(조직) ① 센터에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, 영양사, 위생사 등 전문 인력,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.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.	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요건 구체화

- 집행부의 수정 의견 중 조례안 제2조제1호, 제5제1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중복 기재하는 것을 지양하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  
그 외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“센터의 소재지는 구 내에 둔다.”에 대해서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 범위 축소와 제7조에 규정된 “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지원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어 수정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집행부 수정 의견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달서구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로 안전한 급식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2조제1호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제1호를 재기재, 안 제5조제1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를 재기재한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확인·재기재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중복 기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안 제3조 중 '센터의 소재지는 구 내에 둔다'로 한정할 경우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 즉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(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)이므로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며,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및 개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## 【 조문별 집행부 수정내용 】

조례안	수정(안)	사유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「어린이」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「아동 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1. <u>삭제</u>  <u>수정</u>	
제3조(설립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두며, 센터의 소재지는 구 내에 둔다.	제3조(설립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<u>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</u> 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	상위법령과 중복된 제2조(정의) 제1호 삭제, 제5조(운영 및 위탁) 제1항 수정 (각 호 삭제)
제5조(운영 및 위탁)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거나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	<u>수정</u> 제5조(운영 및 위탁)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거나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<u>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u>	법령에 위배된 제3조(설립) 수정, 제7조(지원) 삭제
제7조(지원)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지원) <u>삭제</u>	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어린이"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.
2. "어린이 기호식품"이란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.
3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.
4. "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"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·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(이하 "식생활 안전지수"라 한다)를 말한다.
5. "고열량·저영양 식품"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(營養價)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.
6. "고카페인 함유 식품"이란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.

###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"급식소"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<개정 2011. 6. 7., 2014. 1. 28.>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의 통합 운영·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9. 4. 30.>

1.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
2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·개발
3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5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6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업무

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30., 2014. 1. 28.>

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 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 
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8., 2019. 7. 9.>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 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2.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  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 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---

#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## 가이드라인

---

2019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## 2. 자격 기준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센터장과 팀장 및 팀원(이하 ‘직원’라 한다) 자격기준은 [표 I-1], [표 I-2]와 같다.

[표 I-1] 센터장 자격 기준

구 분	자격 기준
센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-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-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-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기간동안 식품관련분야의 3년 이상 경력자</li> </ul>

[표 I-2] 직원 자격 기준

구 분	자격 기준
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 또는 식품(산업)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■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■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■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</li> </ul> </li> </ul>
팀원	-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 또는 식품(산업)기사 자격증 소지자
행정 팀원	- 컴퓨터활용능력, 경리, 회계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
\* 식품관련분야 : 식품학, 영양학, 조리학, 급식경영학, 식품위생학 등

- 특별시,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중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직원 자격 기준[표 I-1], [표 I-2]를 충족하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[표 I-3], [표 I-4]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.

[표 I-3] 센터장 자격 완화 기준(특별시, 광역시 제외 지역)

구 분	자격 기준
센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3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-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-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3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-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기간동안 식품관련분야의 3년 이상 경력자</li> </ul>

[표 I-4] 직원 자격 완화 기준 (특별시, 광역시 제외 지역)

구 분	자격 기준
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 또는 식품(산업)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</li> <li>■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■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■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</li> </ul> </li> </ul>